

# (재)인천광역시부평구 문화재단 인권침해 구제 세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 인천광역시부평구문화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 「인권경영 운영 지침」에 따라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접수·조사 및 구제와 관련하여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담당자: 재단 인권경영담당관의 지시를 받아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신고의 접수,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단 직원
2. 재단 관련 인권침해: 재단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
3. 신고인: 재단 관련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또는 제3자로서 재단 관련 인권침해를 사유로 이 세칙에 따라 신고한 사람
4. 피신고인: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행위를 하였다고 신고인에 의하여 특정된 재단 소속 직원

## 제3조(업무수행의 기본 원칙)

- ① 조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인, 피해자, 이해관계자 등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② 조사담당자는 신고인 등에게 법령 및 사규를 공정하게 적용하고, 적법절차를 지키며, 피해자,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③ 조사담당자는 사건을 접수할 때부터 종결할 때까지 신고인 등에게 사건의 처리과정과 결과에 대하여 친절하게 안내하고 설명하여, 신고인 등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인권침해행위의 신고 및 접수)

- ① 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인권경영담당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할 수 있다.
-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재단 관련 인권침해 신고 사건에 대하여 접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각

하한다.

1. 신고의 내용이 재단 관련 인권침해가 아닌 경우
2.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한 신고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심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4.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나서 신고한 경우
5. 사건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신고 접수 후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가. 재판

나. 수사기관의 수사

다. 재단 또는 관련 기관의 조사·감사 등

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그 밖의 법률 등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

6. 신고인이 신고를 취하한 경우
7. 신고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제출된 경우
8. 기각·각하한 사건과 같은 사실에 대하여 다시 신고한 경우
9. 신고의 취지가 그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경우

- ③ 인권경영담당관이 사건을 각하한 경우는 그 사실을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인권경영담당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 내용을 조사·처리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 제5조(인권침해사건 처리)

- ① 인권경영담당관은 재단 관련 인권침해로 접수된 사건에 대하여 인권침해 행위 여부 판단 후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 ② 침해행위가 재단 소관 아닐시 국가인권위원회 등 관계기관 이관 할 수 있다.
- ③ 인권경영담당관(인권경영담당관이 지정한 자를 포함한다)의 조사 방법은 아래 각 호와 같다.
  1.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이해관계자에 대한 출석요구, 진술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부서·기관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또는 감정
4.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 **제6조(신고인의 신분보장)**

- ① 누구든지 이 지침에 따라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인권경영담당관은 신고인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무기명 신고)** 무기명 신고는 각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기명 신고라 하더라도 신고 내용이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예외적으로 조사·처리할 수 있다.

**제8조(다른 구제절차)** 피해자 등은 이 세칙에 따른 신고 외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진정 등 다른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필요할 경우 조사담당자는 다른 절차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조력할 수 있다.

